

공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0 - 161호

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24호(2004. 5. 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0. 3. 12.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0. 3.12. ~ 2010. 4.12.(30일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(☎731-1423)
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

라. 정비구역 변경조서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기정	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	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	31,121.5	-	31,121.5	

마. 정비기반시설 변경결정조서

1) 도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기 점	종 점				
기정	중로	2	1	15	집산 도로	158	익선동 131-1	와룡동 (돈화문로)	일반 도로	-	2004.5.6	
변경	중로	3	1	12~15	집산 도로	158	익선동 131-1	와룡동 (돈화문로)	일반 도로	-	-	
신설	소로	2	1	8	국지 도로	88	낙원동 127-3	익선동 132-2대	일반 도로	-	-	
신설	소로	3	1	6	국지 도로	15	익선동 166-76	익선동 166-2도	일반 도로	-	-	

2) 녹지

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명칭	세분류		기정	증감	변경후		
폐지	녹지	완충녹지	낙원동 82-6일대	2,362.36	감)2,362.36	-	-	

3) 공원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증감	변경후		
신설	1	-	소공원	낙원동 82-6일대	-	증)1,089.1	1,089.1	-	

4) 공공청사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증감	변경후		
신설	1	공공청사	동사무소	익선동 137-6일대	-	증)713.4	713.4	-	

바. 정비계획 변경내용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건폐 율 (%)	용적 률 (%)	높이(m) 층수(지상 /지하)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기정	익선도시환경 정비구역	31,121.5	택지 (1)	26,385.63	익선동 165번지일대	234,000 이하	주거/판매	60 이하	450 이하	50이하 (14/5)
변경	익선도시환경 정비구역	31,121.5	A-1	25,701.4	익선동 165번지일대	288,800 이하	공동주택 판매시설	60 이하	620 이하	72이하 (24/6)
			A-2	713.4	익선동 137-6 일대	-	동사무소	60 이하	600 이하	20이하 (5/-)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기정	○분양주택의 최대규모 : 전용면적 162.6㎡이하 ○임대주택의 규모 : 해당사항없음.(총세대수 : 280세대) ○국민주택의 건설비율 : 해당사항없음.(총세대수 : 280세대) ○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해당사항없음.(총세대수 : 280세대)							
		변경	○분양주택의 최대규모 : 전용면적 171.50㎡이하 ○임대주택의 규모 : 105.50㎡(40세대) ○국민주택의 건설비율 : 해당사항없음.(총세대수 : 600세대) ○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해당사항없음.(총세대수 : 600세대)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기정	○건축한계선 - 태화관길변 6m /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5m도로변 3m							
		변경	○건축한계선 - 태화관길변 6m /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2~15m도로변 3m / 대상지 서측 8m도로변 1m							

사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
아. 변경사유 :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.